



보건복지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문병원 종별변경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안내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의료질 평가지원금 수가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이 유지되는 전문병원 중 의료기관의 종별이 병원에 서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의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의료질 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3장에 따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를 받은 기관

나. 수가의 산정

- 종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별 변경의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결과에 따라 '가-24-1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을 각 대상 연도에 산정

다.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부터 종별이 변경되는 요양기관에 적용

붙임. 전문병원 종별변경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안내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험급여과장

주무관

신춘호

보건사무관

이성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2/21

고형우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240 2021.12.21. 접수 평가보상부-424 2021.12.22.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 / sch10097@korea.kr
종청사 10동)

전화 044-202-2411 전송 044-202-3962 / sch10097@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